

제 330 회 임시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(김규남 의원 발의)

검 토 의 견

2025. 4.

관 광 체 육 국

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의견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김규남 의원 발의) -

- ☐ 김규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630호
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대군인들의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
장기 및 중기,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시립체육시설
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- ☐ 제대군인들의 헌신 존중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,
이는 성인 남성 대부분에 대한 할인이 되어
기존 사회공헌충 및 배려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의 영예성과
정책적 배려취지가 저하되며, 여성 및 건강·가정형편 상 면제자
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예상됩니다.
- 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
일부개정조례안이 기 제출되어 있고,
「제대군인법」 제23조 역시 공공시설 요금할인 대상을
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,
- ☐ 본 조례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해 적용될 수 있도록
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- ☐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